



정책건의

1) 데이터 산업의 과제

-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개방형 거래 체계 구축, 법·제도 명확화, 정보 주체 권리 보호,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필요
 - (법·제도)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명확화 필요
 - (정보주체 권리)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서비스 및 혜택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
 - (사회문제 해결)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

2) 데이터 배당의 과제

- 데이터 소유권에 근거하여 데이터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원용해야 하나, 근대 민법 체계에서는 어려운 문제
 - 데이터는 법정책적인 결단만 있다면 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, 한국 및 근대 법제에 따르면 데이터 생산자에게 귀속될 것
 - (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) 정보주체가 데이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적극적 인격권과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을 들 수 있음
 - 데이터 배당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매도하는 행위(제3자 이전)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
 -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데이터 배당을 추진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문제가 있음

- 데이터 부가가치를 개인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비용 계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, 균등 배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임

3) 데이터세의 과제

□ 데이터세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배당 요구권에 근거하여 정부가 세금의 형태로 개입하여 데이터 배당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논리에 의해 설계 가능

- 데이터의 이중적 소유권 개념에 근거하면, 데이터의 공동 소유 논리에 따라 곧바로 데이터 세금과 연결되고, 이는 기본소득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음
- 정보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, 정보주체가 갖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, 데이터를 자연인의 '또 다른 자아(alter ego)'로 여기는 EU의 GDPR 과징금 개념을 도입하면, '처벌적' 데이터세를 도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
- 정보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,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을 받아들이면, 사회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할 수 있으며, 개별적 노동의 경우에도 개별적 기여도 환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데이터세로 포섭할 수 있고, 이는 기본소득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음
- EU에서 도입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세는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기여를 전제한 것으로, 데이터세를 설계할 경우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

□ 데이터세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이 추가 법인세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임

-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국가부담금 제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
- 데이터세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세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예상됨